

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

납부자	상호 (법인명)
	성명 (대표자)
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주소
위반내역	위반일자
	위반행위
납부내역	발행번호
	납부금액
	납부기한
	수납기관

「선박안전법」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이너 안전 조치 비용납부를 통지합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

직인